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수도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되는 관계로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체제로 개선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한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하수도사용 요금표의 업종을 통·폐합하고 단계 및 요금을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 '01년 이후 하수도사용료 동결로 인한 원리금 상환재원과 하수도사업 신규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수도요금기준중 업종을 종전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적용단계와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을 일반용으로 통합조정
 - 단계를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일반용은 5단계로 통합 조정
- 하수도 사용 업종 조정에 따른 업종 구분표 조정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 하수도법 제21조

5. 검토의견

-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수도 급수 사용료와 함께 고지되므로 상수도 요금체계와 동일체제로 개선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 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가 톤당 248.71원이며 판매단가는 213.70원 으로서 현실화율이 85.9%에 그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6.38%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음
- 또한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하수도 요금의 인상폭은 물가 인상을 보다 낮음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산업 용수에 대하여는 상수도 전용 공업 용수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동결 의결된 사항으로서
- 요금 인상은 2001년 2월 인상 후 매년 일정 부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동안 동결 조치되어 하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인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